

승강기안전을 선도하는 국내 최고의 생활안전 전문기관  
청렴으로 출발! 안전으로 도착!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제 시행 계도기간 적용 안내

1.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귀하의 깊은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2. 「승강기 안전관리법」(2019.3.28. 시행)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함)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3. 위 호에 따라 관리주체는 2019.6.27.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나, 관계기관의 행정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책임보험 상품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4. 이에, 행정안전부에서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적용하여 미가입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을 2019년 9월28일부터 시행하도록 통보되어 알려드리오니, 관리주체가 계도기간 이내에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또한, 추후 책임보험 출시 등 기타 안내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홈페이지 (<http://www.koelsa.or.kr>) 또는 승강기민원24(<https://minwon.koelsa.or.kr>)를 통해 안내드릴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참고로, 기존에 가입하신 보험의 인정 여부는 책임보험 상품개발 완료 이후 상호 비교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보험개발 완료 이후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사장



수신자 본부, 지사, 지역본부, 승강기 관리주체

★대리 유대인 과장 이안수 실장 최형순 처장 전결 05/29 원진봉

협조자

시행 제도정책실-846 ( 2019.05.29. ) 접수 ( )

우 52851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102(충무공동) / <http://www.koelsa.or.kr>  
전화 055)7510-762 /전송 055)7510-769 / [greatu@koelsa.or.kr](mailto:greatu@koelsa.or.kr) / 공개